



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

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제공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6일 「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-8호, 2013. 4. 5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. 본 고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新旧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.

- 편집자 주 -

1. 개정이유

화장품 포장뿐만 아니라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고,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한다.

2. 주요내용

가. 화장품 가격표시 방법 개선(안 제6조제3항, 제4항, 제5항)

- 1) 화장품 가격표시는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
- 2) 전자상거래 활성화, 화장품 유통경로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상품뿐만 아니라 판매의 업태나 개개점포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의 예외규정을 추가함
- 3)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판매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됨

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(안)

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단서 중 “종합제품의 경우”를 “종합제품으로서”로, “경우에 한해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표시하도록 하며,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”를 “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개개점포의 업태,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,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상품에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판매가격의 표시는 『판매가○○원』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☐

신·구조문 대비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표시방법) ①·② (생략)	<p>제6조(표시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의 경우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,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----- ----- 종합제품으로서 ----- 경우에는 ----- 표 시-----</p> <p>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『판매가○○원』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개개점포의 업태,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,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장품 개별 상품에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〈신설〉</p> <p>⑤ 판매가격의 표시는 『판매가○○원』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</p>